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상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2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15.

발 의 자:심상정·류호정·강은미

이은주 · 장혜영 · 배진교

강민정 • 권인숙 • 정성호

양이원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.9% 감소한 반면, 법인 보유 토지는 80. 3% 증가하였음.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·토지 중 상위 1%가 13.8%, 상위 10%가 44%를 보유하고 있으며, 전체 법인 보유 주택·토지 중 상위 1%가 87.6%, 상위 10%가 91.4%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,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,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 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(안 제9조제7항).
- 나.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(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"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"를 "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"로 하고, "보유기간별"을 "거주기간별"로 하며,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u>거주기간</u>	<u>공제율</u>
<u> 2년 이상 5년 미만</u>	100분의 20
5년 이상 10년 미만	100분의 30
10년 이상 20년 미만	100분의 50
20년 이상	100분의 60

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<u>15억원 이하</u>	<u>1</u> 천분의 <u>10</u>
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1천500만원+(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
45억원 초과 97억원 이하	7천500만원+(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)
97억원 초과	2억3천100만원+(9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)

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<u>1천분의 6</u>
<u>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</u> <u>하</u>	1억2천만원+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)
<u>400억원 초과 960억원 이</u> <u>하</u>	3억2천만원+(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)
960억원 초과	<u>10억4천800만원+(9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</u> <u>의 16)</u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~ ⑥	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1세대 1주택자로서 <u>해당 주</u>	⑦ <u>과세기</u>
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	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대통
<u>상 보유한 자</u> 의 공제액은 제1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
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	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인
출된 세액[제8조제4항에 해당	<u>정되는 자</u>
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3항 및	
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	
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	
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	
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	
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(공시	
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	
한 금액을 말한다)을 제외한	
금액]에 다음 표에 따른 <u>보유</u>	
<u>기간별</u>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	<u>거주기간별</u>
로 한다.	

<u>보유기간</u>	공제율
5년 이상 10년 미만	100분의 2
<u> </u>	0
10년 이상 15년 미만	<u>100분의 4</u>
	<u>0</u>
15년 이상	<u>100분의 5</u>
	0

<u>거주기간</u>	<u>공제율</u>
<u> 2년 이상 5년 미만</u>	<u>100분의 20</u>
5년 이상 10년 미만	100분의 30
10년 이상 20년 미만	100분의 50
20년 이상	100분의 60

제14조(세율 및 세액) ① 종합합산 사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토지분 종합합산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u>과세표준</u>	세율
<u>15억원</u> 이하	<u>1천분의 10</u>
15억원 초과 45 억원 이 하	1천500만원+(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20)
45억원 초과 97 억원 이 하	7천500만원+(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30)

②·③ (생 략)

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토 지분 별도합산세액"이라 한다) 으로 한다.

제14조(세율	및	세액)	1		-
					-
					-
					-
					-
				.	

<u>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
<u>15억원</u> <u>이하</u>	<u>1천분의 10</u>
15억원 <u>초과 45</u> <u>억원 이</u> 하	1천500만원+(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20)
45억원 <u>초과 97</u> <u>억원 이</u> 하	7천500만원+(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30)
<u>97억원</u> <u>초과</u>	2억3천100만원+(97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40)

(2)·(3) (현행과 같음)
4
·.

과세표준	<u>세율</u>
<u>200억원</u> 이하	<u>1천분의 5</u>
<u>200</u> 억원	1억원+(200억원을 초과
<u> 초과 400</u>	하는 금액의 1천분의
억원 이하	<u>6)</u>
400억원	<u>2억2천만원+(400억원을</u>
	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
<u> 초과</u>	<u>의 7)</u>

과세표준	<u>세율</u>
<u>200억원</u> 이하	<u>1천분의 6</u>
<u>200억원</u>	1억2천만원+(200억원을
<u> 초과 400</u>	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
억원 이하	<u>의 10)</u>
400억원	3억2천만원+(400억원을
<u> 초과 960</u>	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
억원 이하	<u>의 13)</u>
960억원 <u>초과</u>	10억4천800만원+(9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천분의 16)

⑤ ~ ⑦ (생 략)